

#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의 2022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 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지적사항 없음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지적사항 없음
3. 학교 관련				지적사항 없음
4. 부속병원 관련				해당사항 없음
계				

- 붙임 : 1.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광운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3년 4월 5일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사 배홍기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50 호)

감사 이동훈 (인)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3년 4월 5일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조선영 (인)



피감사 기관장

2023년 4월 5일

광운대학교

총장 김종현 (인)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 監 査 報 告 書

2022회계연도 (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

붙임

1.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2.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입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광운학원

광운대학교

# 감사보고서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2022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광운학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 년 4 월 5 일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 사 배 흥 기 (인)

감 사 이 동 훈 (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이 사장

성 명 조 민 영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법인 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1호 서식)

##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2 년 3 월 1 일부터 2023 년 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법인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지적사항 없습니다.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조 선 영 직인 (사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 감 사 보 고 서

## 학교법인 광운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운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광운대학교의 2023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3 년 4 월 5 일

학교법인 광운학원

감 사

배종기 (인)

감 사

이동훈 이연호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기획처장

성 명

김재우 (인)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교비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 광운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2 년 3 월 1 일부터 2023 년 2 월 28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lt;지적사항&gt; 지적사항 없습니다.</p>	

피감사기관장 광운대학교 총장 김 중 헌



(교비 회계)